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12. 15 선고 2021가단3991 판결 [구상금청구 및 부당이득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강남

담당변호사 장명준, 정행주, 김태규

변 론 종 결 2021. 11. 17.

판 결 선 고 2021. 12. 15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,557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가. 원고는 2011. 3. 17.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피고들의 폭행으로 전치 4주의 좌측 수지 골절상 등(이하 ‘이 사건 상해’라 한다)을 입었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고 병원에 치료비를 선 지급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비용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한다.

○ 일반진료비 등 175,000원, 깁스 등 진료비 265,000원, 교통비 117,000원, 위자료 200만 원, 일반경비 10만 원 합계 250만 원

다. 원고는 건설중장비 사업과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해로 육체적 노동이 불가능하였고 그 치료를 받느라 위 각종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아래와 같은 각종 손실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구한다.

1) D에게 의뢰한 작업비용 400만 원

2) 농장 대체인력 고용비 10,500,000원

3) 2개월 간 중장비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소득 13,400,000원

4) 원고는 건설발명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손실 피해 700만 원

2. 판단

그러므로 보건대, 위와 같은 원고의 각 구상금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내역은 그 내용 자체로 원고가 직접 입은 손해에 관한 것들로,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것이라거나 피고들이 그로 인해 어떤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.

따라서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그 액수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판사 박정대